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8
------------	----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안이유

- 대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도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업무소관 실·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행자부 승인에 따라 사업소의 명칭,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중 “대기·수질·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신설되는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사업소 명칭,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

□ 의안전문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기·수질·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4장제1절제34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11호로 하여 제4장제1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장제2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제35조 내지 제38조)로 하고, 제2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제36조 내지 제38조)를 제3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제39조 내지 제41조)로, 제3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제39조 내지 제42조)를 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제42조 내지 제45조)로, 제4절 충청북도여성회관(제43조 내지 제45조)를 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제46조 내지 제48조)으로, 제5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46조 내지 제48조)를 제6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49조 내지 제51조)로, 제6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49조 내지 제51조)를 제7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2조 내지 제54조)로 하고, 제4장에 제1절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제32조 내지 제3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

제3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바이오산업추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이하 "바이오산업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3조(단장)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소관사무)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바이오산업추진 기획홍보 및 행정지원
2. 바이오엑스포 상징물 이전 및 전시관·홍보교육관 건립운영
3. 바이오 국제학술회의 및 바이오이벤트 기념사업
4.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5. 생명과학단지 국책연구기관 이전 및 입주 지원
6.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7. 밀레니엄타운 사업자 선정 및 민자유치
8. 바이오신도시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9. 바이오신도시건설 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복지환경국) (생략)	제9조(복지환경국) (현행과 같음)
1. 내지 6. (생 략) <u><신 설></u>	1. 내지 6. (현행과 같음) 7. 대기·수질·유독물 등의 환경 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 10. (생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4장 사업소	제4장 사업소
	<u>제1절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u>
<u><신 설></u>	<p>제3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바이오산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이하 "바이오산업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p>
<u><신 설></u>	<p>제33조(단장)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합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34조(소관사무)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이오산업추진 기획홍보 및 행정지원 2. 바이오엑스포 상징물 이전 및 전시관·홍보교육관 건립운영 3. 바이오 국제학술회의 및 바이오 이벤트 기념사업 4.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에 관한사항 5. 생명과학단지 국책연구기관 이전 및 입주 지원 6.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7. 밀레니엄타운 사업자 선정 및 민자유치 8. 바이오신도시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9. 바이오신도시건설 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
<u>제1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u> <u>제32조 - 제33조 (생략)</u> <u>제34조(소관사무) (생략)</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오송신도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 3. - 12. (생략) <u>제35조(지소) (생략)</u>	<u>제2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u> <u>제35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u> <u>제37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 11. (현행과 같음) <u>제38조 (현행과 같음)</u>

현 행	개 정 안
제2절 <u>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u> 제36조 - 제38조 (생략)	제3절 <u>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u> 제39조 - 제41조 (현행과 같음)
제3절 <u>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u> 제39조 - 제42조 (생략)	제4절 <u>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u> 제42조 - 제45조 (현행과 같음)
제4절 <u>충청북도여성회관</u> 제43조 - 제45조 (생략)	제5절 <u>충청북도여성회관</u> 제46조 - 제48조 (현행과 같음)
제5절 <u>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u> 제46조 - 제48조 (생략)	제6절 <u>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u> 제49조 - 제51조 (현행과 같음)
제6절 <u>충청북도종자보급소</u> 제49조 - 제51조 (생략)	제7절 <u>충청북도종자보급소</u> 제52조 - 제54조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 ⑤ (생략)

제105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